

「평창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9년 11월 14일, 평창군수 제출
- 회부일자 : 2019년 11월 25일 회부
- 상정일자 : 제251회 평창군의회(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2019년 11월 27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주민복지과장)

가. 제안이유

조국을 위해 희생 헌신한 관내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 및 지원을 위해 보훈영예수당 인상과 현실에 맞는 사망위로금을 상향 조정하여 사기진작과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가. 신청기준 변경(안 제3조)

- 지원기준일 ⇒ 신청기준일
-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 주민등록을 두고 1년이 경과한

나. 보훈영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상향 조정(안 제8조)

- 보훈영예수당 월 15만원 ⇒ 월 20만원
- 사망위로금 15만원 ⇒ 30만원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 최순철)

- 본 조례안은 보훈영예수당 인상과 현실에 맞는 사망위로금을 상향 조정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 개정 주요내용은 보훈영예수당은 월 15만원에서 월20만원으로 사망위로금은 15만원에서 30만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이며 현지금액 개정 시기는 2018. 1. 19일 보훈영예수당을 월10만원에서 월15만원으로 인상 실시 한 바가 있으며, 참고로, 개정조례안의 상향조정 된 금액은 강원도 내 14개 시군의 입법례에서 볼 때 삼척시, 화천군과 함께 제일 높은 금액에 해당됩니다.
 - ※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강원도 내 14개 시·군 입법례 『붙임 1』
- 조례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붙임 1』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강원도 내 14개 시·군 입법례

	보훈영예수당(매월)	사망위로금
평창군(개정 조례안)	15→20만원	15→30만원
강릉시	10	20
동해시	10	30
삼척시	20	30
속초시	10	20
영월군	15	20
원주시	10	20
춘천시	10	20
횡성군	10	20
고성군	15	20
양양군	10	20
인제군	15	20
정선군	15	30
철원군	20	20
화천군	20	30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의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평창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1부.

평창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지원기준일”을 “신청기준일”로,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을 “주민등록을 두고 1년이 경과한”으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15만원의”를 “20만원의”로, “15만원”을 “30만원”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예우 및 지원대상) 이 조례에 의한 예우 및 지원대상자는 <u>지원기준일 현재 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로 한다.</u></p> <p>제8조(보훈영예수당과 사망위로금)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u>월 15만원의 보훈영예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하고, 해당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15만원을 지급한다.</u></p> <p>1. ~ 4. (생략)</p>	<p>제3조(예우 및 지원대상) ----- ----- <u>신청기준일</u> ----- <u>주민등록을 두고 1년이 경과한</u> -----.</p> <p>제8조(보훈영예수당과 사망위로금) ----- ----- <u>20만</u> <u>원의</u> ----- ----- ----- <u>30만원을</u> -----.</p> <p>1. ~ 4. (현행과 같음)</p>